

2023년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지표 기관설명회

(공단 평가위원 지표)

중부권평가센터 배순덕
(duck0@kosha.or.kr)



Contents

-  1. 평가 개요
-  2. 2023년 개선 평가지표
-  3. 2023년 공통적용 평가지표
-  4. 2023년 주요 평가지표(공단 평가위원 분야)





1. 평가 개요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4항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장비 보유수준** 및 관리능력과 건강진단·분석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건강진단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4항
 -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기준 등)
 - 공단 내규 제1001호<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업무처리예규>





평가 대상 : 238개소

[단위 : 개소]

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238	40	74	42	25	28	29

* 평가계획 공고일 기준 지정일 1년 미만 기관 제외

- 평가기간 : '23. 3월 ~ 6월(5개반 운영)
- 대상 업무 : 최근 2년간 업무 (2021.01.01. ~ 2022.12.31.)
- 평가반 구성 : 3명[공단 직원 2명 + 외부(의학분야) 1명]
 - * 외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서 추천받아 **30명** 인력풀 구성·운영
- 평가 소요일 : 1일(사전 유선협의 후 방문평가)
- **평가일정 내 필히 완료.. 부득이한 사유외 협조부탁**



평가 순서

- **분석 수탁기관**(2021년 기준 11개소) **필히** 우선 평가
 - 의뢰기관(2021년 기준 136개소)
- **복수 지역 운영기관 보유 기관**(보건협회, 근로복지공단 등)
우선 협조



평가 원칙

- 복수 지역 운영기관은 전담 평가반 운영
- 연간 계획 수립지표 : **2021.10.01.~** 지정기관은
2022년도 업무수행에 한해 지표 반영 평가





그간 기관평가 추진 결과

2021년 평가결과 요약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기관수 (개소)	점유율 (%)	기관수 (개소)	점유율 (%)	기관수 (개소)	점유율 (%)	기관수 (개소)	점유율 (%)	기관수 (개소)	점유율 (%)
총 계	145	100	162	100	206	100	212	100	216	100
S등급	1	0.7	25	15.4	44	21.4	21	9.9	29	13.4
A등급	45	31	82	50.7	84	40.8	90	42.5	83	38.4
B등급	55	37.9	36	22.2	53	25.7	80	37.7	78	36.2
C등급	44	30.4	19	11.7	25	12.1	21	9.9	24	11.1
D등급	-	-	-	-	-	-	-	-	2	0.9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는 793.3점으로, '19년(789.4점) 대비 3.9점 상승
 - 최고 965점, 최저 271점이며, 우수기관(A등급 이상)이 51.8% 점유



평가 방법 및 항목

* 평가 매뉴얼에 따른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

등 급	기 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최하위 평가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평가 방법 및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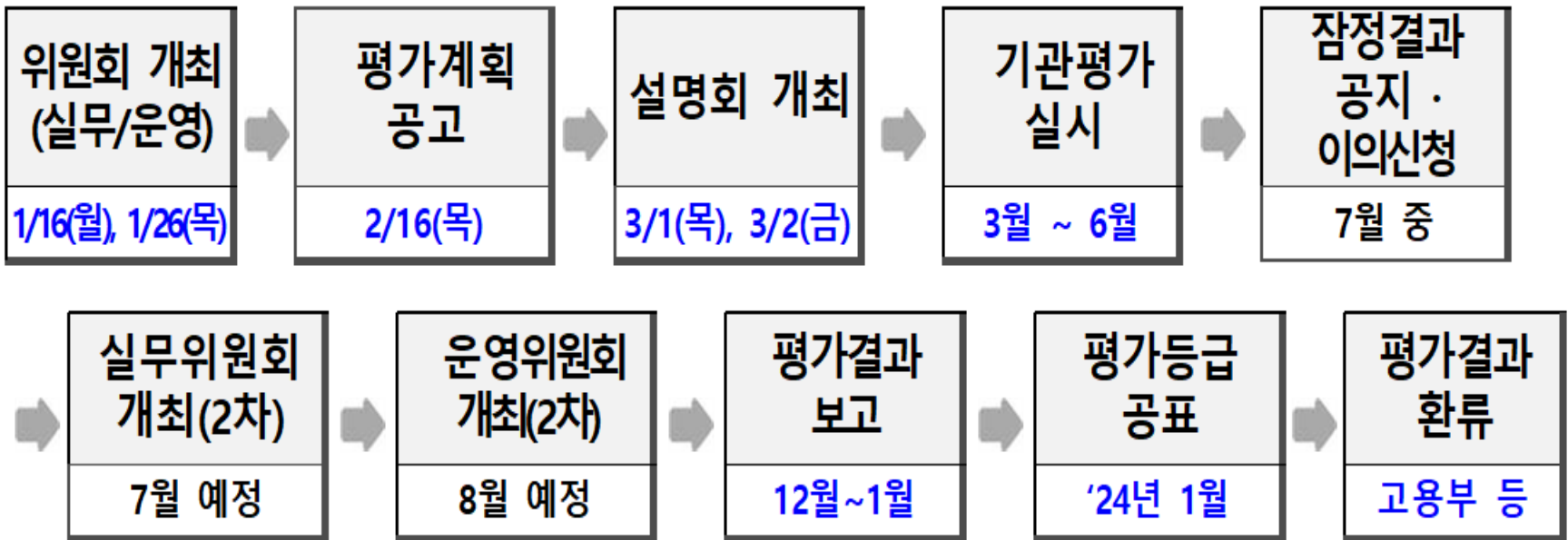
- 2개 분야 67문항(운영체계 400점, 업무성과 6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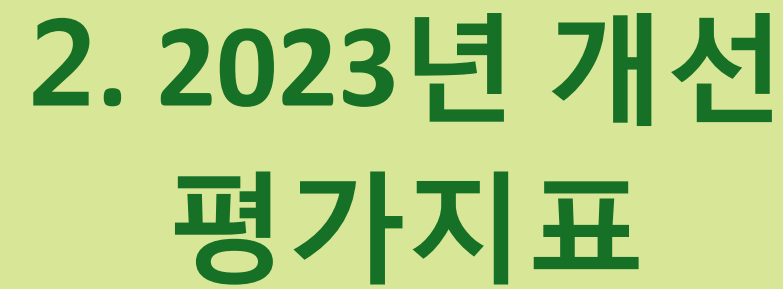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수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문항수
A 운 영 체 계	총 계		400	38	B 업 무 성 과	총 계		600	29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7		B.1	건강진단결과 및 판정 신뢰도	310	13 [9]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150	8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120 (+10)	7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170	19		B.3	신규 발굴율	50	1
	A.4	정부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80~ +10)	3		B.4	고객 만족도	60 (-20)	4 [1]
	A.5	종합화	(+5~ +10)	1		B.5	그 밖의 제반사항	60 (+10)	3
						B.6	직업병 감시체계	(+50)	1

※ ()는 가감점



주요 평가일정







실효성 없는 지표 삭제배점조정(A.2.3)

■ 평가 실효성 낮은 지표 삭제, 전문교육 배점강화

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21년 문항	'21년 배점	'23년 배점	비고
A.2	A.2.3				60	60	
인적 자원 보유 및 교육 훈련	직원 교육·훈련 (내외부)	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A2.3.1	10	10	-
		2	외부 전문교육 참여(외사)	A2.3.2	10	15	배점상향
		3	외부 전문교육 참여(외사인력 제외)	A2.3.3	10	15	배점상향
		4	내부 직무교육 실시	A2.3.4	10	10	-
		5	학술대회 참여정도	A2.3.5	10	10	-
		6	특검기관 소속인력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A2.3.6	10	-	삭제



평가지표 고도화(A.2.1)

■ 지표 평가목적*에 따른 분석여부에 따른 차등 제거

* 목적 : 사전조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시 전문인력 확보 유도

21년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 4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 3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가 3점	☐ 2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기관)	☐ 10
	합산점수가 0점 (자체분석 미 실시 기관)	☐ 0

23년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업보건분야 전문인력 확보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9점 이상	☐ 4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 합계가 6점	☐ 30
	전문인력 추가 확보 점수가 3점	☐ 20
	합산점수가 0점	☐ 0



평가지표 고도화(A.3.2.7)

■ 청력검사기 보정점검(배점 10점) 세부 평가기준 변경

- (現)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 연1회
→ (改) ISO 기준에 따라 연4회 실시('21년 평가 시 기 공지)
- 최초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배점이 아닌 **실시 횟수에 따른 차등 가점 부여** 평가

👉 ('23년) 배점항목 외 가점항목 추가 신설

가점기준	○ 8회 실시 : +5점 ○ 5~7회 실시 : +3점 ○ 3~4회 실시 : +2점 ※ 평가주기가 2년이므로 평가대상기간동안 총 8회를 권고
------	--



『자체평가 보고서』 지표(B.5.3) 신설(최대 +10점)

타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기준 통일화, 평가 시기별 유·불리 차이 차단, 자체능력 향상 노력도 제고,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감소**를 위해 자체평가 제도 도입(가점)

B.5.3	자체평가의 적정성 (가점: +10) [신설]	
평가기준		평가결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며, 내용의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 +10
자체평가 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나, 작성내용이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 +5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내용 50% 이상 누락된 경우		☐ 0
한단계 하향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K2B에 등록한 경우	



지표 평가주체 변경(외부 14개 -> 9개)

- 연구용역 결과 일부 외부평가위원 평가지표 공단 이관<4개>

항목	'21년 외부위원 평가항목	'21년 연구 용역결과	최종 결과
B.1.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B.1.1.2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B.1.2.1	문진의 적정성		
B.1.2.2	이학적 검사 실시 및 기록의 충실성		
B.1.3.1	청력검사 불일치성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지침서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1.5.1	건강진단 결과판정의 적정성		
B.1.5.2	건강진단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B.1.5.3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의 적정성		
B.1.5.4	검사항목의 적정성		
B.1.6.1	2차 검사 대상자 후속 조치	내부위원 이관	내부위원 이관
B.4.2.1	사후관리 대상 지도		



『샘플평가 지표 샘플링 수 조정』

- B.1.1.2 : 사전조사 절차 실행여부 (20개소 → 10개소)
- B.1.3.2 :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20명 → 10명)



공지 지표 중 일부 기존 지표활용 평가

■ 기존 평가지표 계량화 과정에서 일부 기존 불명확

A.1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80
1.1 운영방침, 사업 및 업무표준의 수립			60
	1	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	10
	2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	10
	3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	10
	4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10
	5	폐활량검사 자체 매뉴얼 보유	10
	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10



2. 2023년 공통 평가지표





『문서화 여부』 감점항목(최대 -5점)

-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결재 후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등록(접수)번호, 등록(접수) 일자 기재] 관리
☞ 문서관리 기록기준에 따라 4단계 평가(감점 부여)

- 항목득점+문서화 점수 **최저점은 지표 최저점**

A.1.1.1 ~ 6,
B.1.2.1,
A.2.3.1

운영방침 수립, 표준분석지침서,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매뉴얼,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관한 지침, 폐활량검사 매뉴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조직도 및 업무분장 작성,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

B.1.1.1,
B.1.4.1,
B.1.5.1 ~ 3,
B.2.4.2,
B.2.4.4,
B.4.1.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절차 수립,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건강진단 결과 판정 방법 및 지침, 업무 관련성 평가 판정 지침, 업무적합성 평가의 판정 지침, 자체 분석 내부정도관리, 검체 외부 의뢰 지침서, 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수탁기관의 점수의
한단계 하향점수가
상한 점수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 기관

■ 분석관련 평가는 분석의뢰 수탁기관의 해당 평가점수 적용

순번	지 표 번 호	평 가 문 항	배 점
계			125점
1	A.1.1.2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	10점
2	A.1.1.3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	10점
3	A.1.1.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평가	10점
4	A.3.1	고성능장비 추가 확보·유지관리 적정성	40점
5	A.3.2.8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사용 대장	5점
6	A.3.2.10	폐기물 처리	5점
7	A.3.2.11	비상용 샤워 및 세안설비 설치	10점
8	A.3.2.12	가스용기 전도 방지장치 및 저장	5점
9	A.3.2.13	분석용 시약 보관상태	5점
10	A.3.2.14	분석장비 국소배기장치	5점
11	A.3.2.15	보호용구 구비	5점
12	A.3.2.18	저울 검정 및 교정	5점
13	B.2.4.1	분석 정도관리 결과(배점 항목만)	5점
14	B.2.4.2	내부 정도관리	5점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 기관

- * 분석실이 없고, 분석을 1개 기관에 의뢰한 경우:
 - 수탁기관의 평가 점수 반영
 - * 분석실이 없고, 분석을 2개 이상 기관에 의뢰:
 - 수탁기관의 평가 점수 중 가장 낮은 평가 점수 반영
 - * 분석실이 있으나, 일부 검체만 외부 기관에 의뢰:
 - 자체 분석실 평가 점수 반영
- 수탁기관 폐업 등 특이사항 발생시 현황파악 후 위원회 상정하여 결정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1.1	특수건강진단 운영방침 수립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적절한 경우		☐ 10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		☐ 6	
연간 운영방침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체계적으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평가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10점 :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고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6점 : 평가기간 동안 운영방침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 방침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2점 : 운영방침을 미수립한 경우

(한단계 하향) 운영방침에 정책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공표 누락시

(한단계 하향) 매년 운영방침 성과개선 여부 미평가

- 매년 수립여부, 정책목표 적정성, 성과분석 후 반영, 모든 수행 인력에 대한 공유 여부로 평가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1.2	생체시료 노출평가 표준 분석 지침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표준 분석지침서가 적정한 경우		☐ 10
표준 분석지침서가 보통인 경우		☐ 6
표준 분석지침서가 미흡한 경우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분석 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을 <u>표준화한 생체시료 분석업무 지침을</u> 보유하여 신뢰성 확보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10점 : 표준 분석지침 비치(전자화일 최종본 인쇄물 또는 유인물 비치)
- 6점 : 표준 분석지침 보완 필요한 경우
- 2점 : 표준 분석 지침 미비치(미작성)

○ 분석지침서 : 개정(비치)일시, 분석항목(분석을 실제 시행하는 항목만 포함가능), 분석방법(기구, 시약종류, 시약 %함유량, 분석과정, 표준시약 제조방법, 검체처리, 분석장비 조건), 결과 계산방법 등이 포함

(한단계 하향) 분석자 면담결과 지침서 미숙지(기관별 주요 분석대상 물질)

(한단계 하향) 분석 실적 물질이 표준분석지침에 누락

- 공단 또는 타 기관 지침을 출력한 경우나 전자화일만 보유한 경우 **미흡 평가**
- 분석 의뢰기관은 수탁기관 점수반영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1.3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이 적정함		☐ 10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이 보통임		☐ 6	
생물학적 노출평가 장비 사용 매뉴얼이 미흡함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검진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u>장비의 정확한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u> 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u>매뉴얼을 확보</u> 하는 등 기기 유지상태 평가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10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모두 비치하고 내용이 적정함
- 6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비치하였으나, 일부 장비에 대한 지침이 누락되거나 지침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2점 : 장비별 사용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 : 매뉴얼 비치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 (한단계 하향) 매뉴얼 내용 누락(작동순서, 장비사용방법_한글, 장비관리방법)
- (한단계 하향) 분석자 면담결과 매뉴얼 미숙지
- 영문 작성, 장비 판매회사에서 제공한 매뉴얼 그대로 비치 → 없는 것으로 판단
- 분석 의뢰기관은 수탁기관 점수반영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1.4	진단검사 시료보관 및 운반에 관한 지침서 보유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적정한 경우	☐ 10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보통인 경우	☐ 6
진단검사 시료보관에 대한 지침이 미흡한 경우	☐ 2
문서화 여부(감점 : -5점)	☐ -5 ☐ -3 ☐ -2
평가목적	
○ 진단검사를 위한 <u>시료의 채취, 보관, 운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침서 유무</u>를 평가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10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 보유
- 6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내부지침서는 없으나, 외부기관에서 작성한 지침서를 보유(활용)하고 있음
- 2점 : 진단검사 시료의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없음

■ **평가기준** : 지침서 보유 및 내용 충실성(전처리, 보관, 운반, 폐기 포함)

- 객담, 소변, 혈액 등 모든 검체에 대한 내용 포함
- (한단계 하향) 임상병리사 면담결과 지침서 미숙지
- 열람하기 어려운 곳이나 직원이 못찾는 경우 → 없는 것으로 판단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1.5	폐활량검사 자체 매뉴얼 보유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적절한 경우	☐ 10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보통인 경우	☐ 6
폐활량검사 매뉴얼이 미흡한 경우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폐활량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특성에 적절한 표준매뉴얼 작성 및 활용여부 확인	

■ 평가기준 :

- 매뉴얼 보유 및 내용 충실성(해설서 참조 표준매뉴얼 내용+건강진단실무지침 기반 작성)
- (한단계 하향) 검사자 면담결과 매뉴얼 미숙지
- 공단 정도관리 교재 비치, 외부기관 자료 그대로 비치 → 없는 것으로 판단, 미흡
- 폐활량검사자 자격을 판단하여 매뉴얼에 반영 여부 평가

A.1.1.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적정함	☐ 10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보통임	☐ 6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 등이 미흡함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연구실 <u>안전환경</u>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에 따른 <u>실험실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u> 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10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고, 동 지침에 따라 장비 및 설비 점검을 양호하게 실시
- 6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점검 실시
- 2점 : 실험실 안전보건 지침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평가기준 : 지침 제정 및 이행의 충실성

- (한단계 하향) 담당직원 면담결과 지침 미숙지
- (한단계 하향) 실험실 안전점검일지에 점검자의 성명, 서명 누락된 경우

* 지침 포함 내용 : 화학물질 누출, 전기설비 누전 등 사고 발생 대처, 분석용 유해물질의 배기 또는 배액처리, 검체 취급, 실험실 설비 확인, 보호구 등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A.1.2	업무관리체계 (배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적정	☐ 20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작성이 일부 미흡	☐ 12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 <u>미작성</u>	☐ 4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검사, 분석 및 진찰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의 적정성 확인





A.1 운영방침 및 업무표준의 수립

- **평가기준 : 조직도 및 업무분장의 매년 문서화 여부**
 - (한단계 하향) 홈페이지 등에 사진(의사) 소속, 성명, 업무, 연락처 미포함
 - ☞ 사진은 수검자가 보기좋은 곳에 모든 의료진 확인가능토록 게시
 - (미흡) 변경사항 발생시 1개월 이내 변경 미조치
 - (미흡) 운영 총괄책임자, 업무별 책임자 및 담당자 미구분
- **준비 서류 : 조직도, 업무분장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등**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2.2.1	관련 분야 자격증 및 경력 보유 수준 (배점: 30)
평가기준	평가결과
<u>산업보건분야</u> 종사 경력이 평균 5년 이상	☐ 30
<u>산업보건분야</u> 종사 경력이 평균 3년 이상 5년 미만	☐ 18
<u>산업보건분야</u> 종사 경력이 평균 3년 미만	☐ 6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종사자의 <u>산업보건분야</u> 종사 경력을 평가하여 풍부한 경험에 따른 지식과 응용력을 가진 인력을 보유토록 유도함으로써 검진 결과의 신뢰성 제고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 **평가기준 : 직업환경의 제외 지정인력의 산업보건 합산 평균경력**
 - (경력기준) 특검, 측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지정 인력 자격을 갖춘 경력 합산
 - **개인별 경력 상한은 10년, 경력기간 중 연 단위를 초과한 개월수 미인정**
 - * **개별 개월수 인정, 합산 경력 개월수는 내림 평가(A.2.2.2 고용기간 동일)**
 - 고용부 신고인력(변경 인력포함) 기준 평가, 평가 대상기간 ½ 미만 근무자 제외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2.3.1	특검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행 (배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적절한 경우	☐ 10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보통인 경우	☐ 6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	☐ 2
문서화 여부 (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노력 정도를 평가





A.2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 세부 기준

- 10점: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6점: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지 않았으나,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우
- 2점: 평가기간 동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 **평가기준 : 연간 교육계획 매년 수립 및 실행 여부**
 - (한단계 하향) 교육계획 대비 실행율 50% 미만
 - 고용부 신고인력(변경 인력포함) 기준 평가, 평가 대상기간 1/2 이상 근무자 포함
- **매년 3월 이내에** 수립여부, 신규 고용시 배치 후 **1개월 이내 재수립**
- **교육 종류 : 외부 전문교육, 직무교육,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등**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3.1	고성능 장비 추가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배점: 40)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40
	선택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의 유지·관리가 적정	☐ 24
	고성능 장비 및 선택검사 장비 미확보	☐ 8
평가목적	○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 <u>노출지표 분석을 위한 고성능 장비와 2차 선택 검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u>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A.3 시설· 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 **평가기준 : 생물학적노출지표 분석(시행령 별표 자, 거, 너)용 고성능 장비 확보·사용 여부**

- 고성능 장비를 1개 이상 확보하거나, 추가 확보한 경우 40점

- 원자흡광광도계(AAS)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 (ICP/MS), 수은분석기(추가)
-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 검출기 추가 확보 (MSD, ECD, NPD),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추가 확보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추가 확보

- 선택검사 장비중 [중이검사기, 24시간 혈압계, 24시간 심전도계] 모두 확보 : 24점
(유지관리 적정) 구매이력 확인, 평가대상기간에 사용실적이 있어야 함
(한단계 하향) 유지관리 부적정
(장비 불인정) 타부서 공용 사용장비 및 2년 미만 리스사용 장비
 - 작측기관 평가시 불인정받은 고성능장비(HPLC 등)의 경우 인정
- ☞ 분석의뢰 기관은 24점 이하 평가, 수탁기관보다 한단계 하향 평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3.2.7	청력검사기 보정점검 (배점: 10, 가점: +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적정한 경우		☐ 10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보통인 경우		☐ 6
청력검사장비 보정점검이 미흡한 경우		☐ 2
[가점]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 실시 횟수에 따른 점수 부여		_____ 점 (최대 +5점)
평가목적		
○ 청력검사기의 보정점검 실시여부 평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 세부 기준

- 10점: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한 경우
- 6점: 기능보정과 음향보정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
- 2점: 기능보정과 음향보정 중 한 분야라도 보정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 : 기능보정 및 음향보정 점검 적정 수행 여부

- 기능보정 적정 : 점검표로 이루어져 청력검사 매 실시일 점검
 - ☞ 점검표 : 장비명, 검사자/피검사자, 보정일자, 보정결과 등(서명누락 미흡)
- 음향보정 적정 : 연 1회 이상, 외부업체 보고서로 확인
 - ☞ 음향보정 점검표상 S/N가 실제 사용 장비와 다를 경우 미흡

【가점기준(최대 +5점)】

ISO 기준(분기당 1회 이상)에 따라, 청력검사가 음향보정점검 실시 횟수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8회 실시한 경우 : +5점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5 ~ 7회 실시한 경우 : +3점
-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3 ~ 4회 실시한 경우 : +2점
- ※ 평가주기가 2년이므로 평가대상 기간동안 총 8회를 권고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의사->공단)

B.1.3.2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배 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양호 : 조사 대상 2개 사업장(부서) 모두 적절		☐ 20
보통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1개소만 적절		☐ 12
미흡 :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모두 부적절		☐ 4
평가목적		
○ 직업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인 소음성 난청을 표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 항목인 청력검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실제 검사 시기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검진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 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기준

- “적절”의 의미 : 안내 및 검사 시기가 모두 적절한 경우
- 검사 시기나 안내 중 1개만 적절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우로 평가

□ 평가 방법

- 해당 사업장(부서)에 청력검사시 소음 노출 중단 후 14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 가능 안내 통보 여부와 실제 청력검사 시기의 적절성 평가
 - ※ 평가대상 기간 내 최근 정밀청력검사를 시행한 사업장 2개소(각 5명 총 10명) 선정
 - 불가능시 임의로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2개소 선정
 - ※ 사업장 소속된 특검기관의 경우, 다양한 공정의 10명 검진자 선정
- 평가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 평가 방법(1,2차 모두 확인)

- ①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중단 후 14시간 경과 후 실시가능’는 안내 문서를 사업장 담당자(자체 특검은 소속부서 책임자)에게 안내문서에 대한 수신여부 확인
 - * 자체 특검기관은 공정이 다양할 경우 2개 이상 공정 샘플링
- ② 기관 보유 차트 또는 정밀청력검사 결과지 혹은 이에 준하는 문서 등에 ‘소음작업 최종노출 시간과 실제 검사시간’ 기록에 대하여 “근로자 자필 서명”으로 확인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의사->공단)

B.1.4.1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지침서 (배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내부지침 보유		☐ 20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공단 등 외부지침만 보유·사용		☐ 12
생물학적 노출지표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경우		☐ 4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이나 생물학적 노출지표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 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는 바, 특수건강진단의 질(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정 지침 보유여부 확인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노출지표 시료채취를 위한 기관 자체 지침서 보유 여부 확인 ○ 문서화 여부에 따라 3단계 감점으로 평가(공통적용 사항) |
|--|

□ 평가 기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 지침서에는 시료채취에 대한 업무분장, 채취시기 및 방법, 수거 방법, 보관방법, 의뢰 방법(의뢰항목이 있는 경우), 사업장 안내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일부 누락시 <u>최하위</u> 평가 ※ 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u>개정시</u> 반영되어야 함 ○ 지침서가 있으나 담당자가 찾지 못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지침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담당자(실무자)를 면담하여 동 검사지침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이해)하고 있는 못하는 경우에는 <u>한단계 하향평가</u> |
|--|

확인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확인(담당자 면담), 시료채취 지침서 등 관련서류 |
|--|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의사->공단)

B.1.4.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시료 채취 적절성 (배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기록이 모두 적정하며, 유선 확인 사업장 모두 적정		☐ 20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 중 일부 기록이 누락 또는, 유선 확인 사업장 일부 적정		☐ 12
조사 대상 사업장(부서)의 시료채취 기록이 없거나, 유선 확인 사업장 모두 부적정		☐ 4
평가목적		
○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방법을 확인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전체적인 질(수준) 평가		



※ 평가대상 선정

① 평가 기간 동안에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한 사업장 중에서 10개소를 선정

- 생물학적 노출지표 대상인자는 유기용제 취급사업장으로 선정
- 자체 특검기관인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 내 담당부서 10개를 선정

※ 평가대상이 전혀 없는 기관 경우에는 평가종료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평가방법 :

① 조사 대상인 10개 사업장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관련기록에서 시료채취 시간, 수거시간, 시료종류, 특수견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 서명 등을 확인

- 실제 시료채취가 규정(산안법, 고시, 실무지침)을 따르고 기록이 완벽할 경우 '적정'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양식 자체가 부적정하거나, 또는 시료채취시점에서 작성되지 않고 추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
- 특수견진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 서명 두 종류의 서명이 모두 있을 경우에만 인정

② 대상 사업장 중에서 2개 사업장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 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채취 시간이 실무지침 등에 의거 적정한지 유선확인

※ 확인서류:

- 최근 2년 동안에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실시한 사업장 명부,
- 시료채취 시간, 수거시간, 시료 종류, 기관 또는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 서명 등이 기재 되어 있는 생물학적 노출지표 관련기록



B.1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의사->공단)

B.1.6.1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 (배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적절한 경우		☐ 20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보통인 경우		☐ 12
2차 검사 대상자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		☐ 4
평가목적	○ 2차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해당 검사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적절한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 평가	





○ 평가방법

① 평가기간내 판정불가(U판정)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0개소(10명의 U판정 근로자)** 선정

* U판정 사업장이 부족한 경우 U판정 근로자의 전수 선정 + 2차 검사 실시 사업장 총 10개소 대상 선정하여 2차 검사 실시 안내 및 미실시 사유 평가(필요시 유선 확인)

② U판정 사업장에 대하여 판정불가 사유(해당 근로자의 퇴직 등)를 확인하여 기록한 문서 (전자문서 포함)를 확인하며, 기록 문서가 없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필수 기록 사항 누락, 거짓 작성 등 포함)

* 필수 기록 : 확인 날짜, 사업장 담당자, 기관 담당자(확인자), 2차 검사 미실시 사유, 기타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 확인서류: 2차 검사 후속조치관련 기록, 문서 등 관련서류

※ 첨부/증빙 자료: ☐유 ☐무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2.1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정도관리 결과 (배점: 30)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80점 이상		☐ 3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70점 이상		☐ 2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이상		☐ 1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미만		☐ 5

- 평가기준 : 평가기간내 정기 정도관리 결과(100점 환산기준) 반영
 - 공단 연구원 자료 반영
 - ☞ 정기정도관리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 최근 수시 정도관리 결과로 평가

■ 연구원 자료 반영 평가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2.2	폐활량 검사 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배점: 40)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90점 이상		☐ 4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75점 이상		☐ 3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이상		☐ 2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미만		☐ 10

- 평가기준 : 평가기간내 정기 정도관리 결과(100점 환산기준) 반영
 - 공단 연구원 자료 반영
 - ☞ 정기정도관리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 최근 수시 정도관리 결과로 평가

■ 연구원 자료 반영 평가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2.3	청력 검사 능력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배점: 30)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100 점		☐ 3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93 점 이상		☐ 2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83 점 이상		☐ 10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83 점 미만		☐ 5

- 평가기준 : 평가기간내 정기 정도관리 결과(100점 환산기준) 반영
 - 공단 연구원 자료 반영
 - ☞ 정기정도관리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 최근 수시 정도관리 결과로 평가

■ 연구원 자료 반영 평가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B.2.4.1		분석 정도관리 결과(배점: 5, 가점: +10)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100점	☐ 5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이상	☐ 3
		평가기간 내 정도관리 결과 평균 60점 미만	☐ 1
[가점]	선택항목 4개 이상 적합		+ 10
	선택항목 3개 이상 적합		+ 5

○ 선택항목 적합 기준에 따라 평가 적용

- 유기(12항목) : 소변 중(마뇨산, 메틸마뇨산, 만델산, 페닐글리옥실산, 류콘산, 삼염화초산, 총삼염화물, 2,5-헥산디온, N-메틸포름아미드, N-메틸아세트아미드, 페놀, o-크레졸)
- 무기(7항목) : 혈액 중(망간, 납), 소변 중(수은, 카드뮴, 비소, 니켈, 크롬)





B.3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발굴율



B.3.1	특수건강진단 대상 신규 <u>발굴율</u> (배점: 50)	
	평가기준	평가결과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40% 이상	☐ 50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30% 이상 ~ 40% 미만	☐ 40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 이상 ~ 30% 미만	☐ 30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20% 미만	☐ 20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사업장 비율 0%	☐ 10
평가목적		
○ 기초 산업보건제도인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u>이행율</u> 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권 유입이 취약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u>발굴율</u> 평가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관('21.01.01. ~ '22.12.31.) 동안 공단에 전송한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중 20인 미만 사업장 통계 활용

□ 평가 기준

- 신규 발굴율(%) = ('21년도 신규사업장 비율 + '22년도 신규사업장 비율) ÷ 2
- 해당 사업장(20인 미만 사업장 신규)이 전혀 없는 경우, 득점그룹별 평균점수 반영
※ 신규사업장 :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도 기준 3년 이내 미실시 사업장

확인사항

■ K2B 자료 반영 평가

- 전산자료를 활용한 사전평가





B.4 고객 만족도



B.4.1.1	특수건강진단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배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선활동에 따른 기록이 있음		☐ 20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고,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 12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개선활동이 없는 경우		☐ 4	
문서화 여부(감점: -5점)		☐ -5 ☐ -3 ☐ -2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 위원회 설치 등 개선활동 정도를 평가			





B.2 건강진단 분석능력 신뢰도

- 특수건강진단기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며, 실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수준 향상을 위한 위원회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내·외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구성사실이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외부 직원이란 특수건강진단 분야 이외의 인력이 참여한 경우 포함(단, 동일기관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인정 불가), 실질적 기관 질 수준 향상에 기여 가능 해야함
- 특수건강진단부서 또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한 개선노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위원회는 최소한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개최하는 경우 한단계 하향 평가





B.4 고객 만족도

B.4.2	만족도 평가 (감점: -20)	
평가기준		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 0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80점 미만인 경우		☐ -10
민원을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0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사업장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산업보건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유도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민원 접수 건수 확인하여 평가 ○ 평가기간 내 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또는 사업장 대상으로 평가 □ 평가 기준 ○ 조사된 모수가 <u>5개 미만이거나 성공 조사건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체 평균점수 적용</u> ○ 평가기간 중 “<u>민원을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u>”는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기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건강진단기관 관련 접수된 경우 - 기타 “민원을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평가자가 판단하되, 추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판단	
확인사항	
○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	

3

평가지표별 설명



B.5 그 밖의 제반사항

B.5.1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의 적정성 (배점: 50)	
평가기준		평가결과
건강진단 <u>개인표</u> 송부가 적절한 경우		☐ 50
건강진단 <u>개인표</u> 송부가 보통인 경우		☐ 30
건강진단 <u>개인표</u> 송부가 미흡한 경우		☐ 10
평가목적	○ 특수건강진단 결과 <u>개인표</u> 송부일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간('21.01.01. ~ '22.12.31.)에 공단으로 전송된 결과표에 대해 평가 ※ 국고대상 사업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기준(건강진단일 기준으로 평가) - 50점: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90% 이상인 경우 - 30점: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 이상 ~ 90% 미만인 경우 - 10점: 건강진단 결과표를 30일 이내에 송부하는 경우가 70% 미만인 경우	

K2B 자료 반영 평가



B.5 그 밖의 제반사항

B.5.3	자체 평가의 적정성 (가점: +10) [신설]	
평가기준		평가결과
자체 평가 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며, 내용의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한 경우		☐ +10
자체 평가 보고서를 K2B에 등록하였으나, 작성내용이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 +5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내용 50% 이상 누락된 경우		☐ 0
평가목적		
○ 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이외제기 감소 및 자체 수준 향상 노력도 제고를 유도		





B.6.1

중독질환 발굴 및 조치 건수 (가점: +50점)

□ 판단 기준

-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실적과 ② 미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실적 중 높은 항목을 반영

①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 평가기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질환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직업병안심센터 등) 또는 공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 중독질환 발굴 건별 +30점

②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의 중독질환 발굴

- 평가기간 동안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근로자 또는 타 진료과의 의뢰 대상자에 대한 중독질환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직업병안심센터 등) 또는 공단에 보고한 실적을 평가
- 중독질환 발굴 실적이 있는 경우 +50점

-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D1)발굴에 대한 판정 즉시(결과표송부 30일전) 고용노동부(직업병안심센터 등) 또는 공단에 통보한 실적 평가

- 발굴 사업장 당 +10점 부여(최대+30점)
- 화학적 인자 중 금속류 20종(납 등) 평가 제외

※ 화학적 인자(143종)

(유기화합물 109종, 산 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

안전은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